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2
----------	-----

2019년 8월 2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2일, 성흠제 의원(찬성자 17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동(空洞)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1) “공동(空洞)” 및 “공동(空洞)조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 (2)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2조).

(3)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함(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 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각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공동(空洞)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설치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 설>	공동(空洞) 및 공동(空洞)조사의 정의 신설
제12조	<신 설>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 가능 ② 시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공동조사 비용 정산 시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부칙 제2조	<신 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존속기한 연장 가능

### ■ 용어정의 추가 신설에 관한 의견(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용어정의 추가는 국토교통부 「지

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상 “공동(空洞)” 및 “공동(空洞)조사”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는 안 제12조의 공동조사 관련 내용 신설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 공동(空洞):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 공동(空洞)조사: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

## ■ 공동(空洞)조사 대행 규정 신설에 관한 의견(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제34조제1항1)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

- 
- 1)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지표하부에 공동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

- 한편, 서울시 역시 같은 법에 의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 제정 이전부터 서울시 도로의 통행안전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임.

[표] 서울시 공동(空洞)조사현황('19.7월말 기준)

구 분		계	'14.	'15.	'16.	'17.	'18.	'19.7.	
도로연장 (km)	1,574	용역	1,338	18	75	321	377	298	250
		자체	236	-	13	36	44	86	57
조사연장 (km)	9,269	용역	8,295	61	541	1,980	2,065	1,993	1,655
		자체	974	-	73	206	270	253	172
공동(개)	3,516	용역	3,313	37	238	1,054	1,241	644	99
		자체	203	-	13	50	39	45	56
용역비(백만원)		용역	11,482	(무상)	809	3,147	3,040	2,316	2,120

- 따라서,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27,739km)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표] 참조)이기 때문에 각 지하시설물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조사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표] 서울시 지하시설물관리자 현황

분 야	市 주관부서	지하시설물 관리자
상수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하남시
		광명시
	하천관리과	서울시설공단
하수도	물재생계획과	자치구(25)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4)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전기설비	녹색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통신설비	정보시스템담당관	(주)KT
		CJ헬로
		SK브로드밴드(주)
		SK텔레콤
		드림라인(주)
		세종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
		(주)딜라이브
		(주)티브로드
		(주)현대HCN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에너지서비스		
가스공급시설	녹색에너지과	한국가스공사
		(주)에스코
		서울도시가스(주)
		(주)대륜이엔에스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에너지서비스		
열수송관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에너지서비스
공동구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지하도로	도로시설과	자치구(25)
		서울시설공단
지하광장	주차계획과	서울교통공사
도로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도시철도	도시철도과	공항철도(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서울교통공사
		네오트렌스
철도	도시철도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차장	주차계획과	(주)서울메트로환경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건설혁신과	서울시설공단

- 이에 안 제12조제1항은 시장이 타 기관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 기존에 각 기관별로 시행해야 했던 공동조사를 서울시로 일원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타 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다음으로, 제2항부터 제3항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와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행한 공동조사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공동조사 비용 정산 시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정산을 위한 것으로 정산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위수탁 계약서 체결과정에서 공동조사 물량 및 방법, 기간 등에 대한 가급적 정확한 추

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지난 7월 25일 서울시는 (주)KT,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하시설물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합동 안전점검 및 훈련, 공동 조사 위탁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5년) 명시에 관한 의견(안 부칙 제2조)

- 안 부칙 제2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sup>2)</sup>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sup>3)</sup>에 따른 것으로, 법상 의무설치 위원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 2)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3)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12
----------	-----

발의년월일 : 2019년 08월 02일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 (1명)

찬 성 자 : 박순규, 홍성룡, 전병주, 오중석,  
이병도, 정진술, 최정순, 김정환,  
송아량, 김태호, 김정태, 강동길,  
최웅식, 전석기, 김평남, 김기대,  
문장길 의원 (17명)

## 1. 제안이유

-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空洞)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동(空洞)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공동(空洞)” 및 “공동(空洞)조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
- 나.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2조).
- 다.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함(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  
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  
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대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u></p> <p>6. <u>“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u>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p> <p>1. <u>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u></p>

제12조 (생략)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